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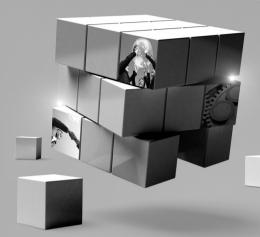


IFRS 17



2018.11.





IFRS 17 주요 이슈별 실무 적용사례







머리말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인 IFRS 17의 도입 준비를 위해 한국 생명보험업계는 회계 · 계리 시스템 구축 진행 및 내부 전담조직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칙중심의 IFRS 기준서 특성 상 실무적용을 위해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새로운 제도 연착륙을 위한 지원 및 이슈 논의를 위한 소통의 목적으로 IFRS 17 준비가 상대적으로 먼저 시작된 주요 생보사들과 함께 'IFRS 17 주요 이슈별 실무 적용사례'를 마련했습니다.

본 실무 적용사례는 관련 회사의 확정된 최종 회계정책이 아닌 현재예상 방안이므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방안이 다수인 경우 그 순서는 임의적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실무 적용사례는 IFRS 17 실무 지원을 위한 참고 자료의 성격이므로 회계정책과 관련된 업계 기준 또는 실무 표준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IFRS 17 주요 이슈별 실무 적용사례' 작성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회사 및 담당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명보험협회는 새로운 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목 차

I. 외계서리들 위안 기본 정모 파악	
1. 적용범위 · · · · · · · · · · · · · · · · · · ·	. 8
2. 회계단위 · · · · · · · · · · · · · · · · · · ·	10
3. 회계모형 · · · · · · · · · · · · · · · · · · ·	17
II. 보험부채 인식 및 측정	
4. 현금흐름 · · · · · · · · · · · · · · · · · · ·	22
5. 할인율 · · · · · · · · · · · · · · · · · · ·	27
6. 위험조정 · · · · · · · · · · · · · · · · · · ·	34



Ⅲ. 손익계산서 및 공시

8. 수익/비용 · · · · · · · · · · · · · · · · · · ·	60
9. 표시 및 공시 · · · · · · · · · · · · · · · · · ·	66
IV. 기타	
10. 전환규정 · · · · · · · · · · · · · · · · · · ·	70
11. 재보험 · · · · · · · · · · · · · · · · · · ·	78
12. 발생사고부채 ·····	88
13. 연결 회계정책 · · · · · · · · · · · · · · · · · · ·	93



I

회계처리를 위한 기본 정보 파악

I

회계처리를 위한 기본 정보 파악

1. 적용범위

[IFRS 17 적용 계약 판단 기준]

Q 1.1

보험위험 유의성 테스트를 수행시 중요성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방안 1

- ♦ 상품개발시점에 보험위험 유의성을 판단
 - 전환 이후 신규계약의 부가급부금 비율은 10% 적용
 - 전화계약의 경우 판매시점의 부가급부금 비율 적용(5%~10%)

방안 2

- ◆ 상품개발시점에 보험위험 유의성을 판단하나(방안 1과 동일), 상품개발시점에 판단이 어려운 상품의 경우 보험위험 유의성을 사후적으로 판단 (예 : 주계약이 투자계약이고 특약이 보험계약인 경우)
 - 전환 이후 신규계약의 부가급부금 비율은 10% 적용
 - 전환계약의 경우 판매시점의 부가급부금 비율 적용(5%~10%)

- ◆ 판매시점(신계약 인식시점)에 개별 계약별 보험/투자계약 여부 구분
 - 전환 이후 신규계약의 부가급부금 비율은 10% 적용
 - 전환계약의 경우 판매시점의 부가급부금 비율 적용(5%~10%)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판단기준]



재량적 참가 특성(Discretionary Participating Feature)에 대한 실무해석 및 국내 판매상품 중 IFRS 9 상품으로 적용되는 계약이 있는가?

- ◆ IFRS 4의 "임의배당요소"와 IFRS 17의 "재량적 참가특성"의 실무적 해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IFRS 4와 IFRS 17의 기준서상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을 판단하는 요 건(3개)도 차이가 없어, IFRS 17에서도 IFRS 4와 같이 "계약자 배당"을 재량적 참 가 특성으로 정의
 - "공시이율"의 경우 현행 공시이율 산출 방법상 미래성과가 포함(조정률)된다는 점을 근거로 재량적 참가 특성으로 정의하지 아니함
- ◆ 계약자배당 속성과 보험위험이 존재하지 아니한 무배당 퇴직보험, 무배당 퇴직연금 등은 재량적 참가특성이 없는 투자계약으로 분류되어 IFRS 9 적용대상 투자계약에 해당
 - 유배당 퇴직보험은 계약자배당 속성으로 IFRS 17의 적용 대상
 - 하지만, (연금 전환 전) 무배당 퇴직연금과 일관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정보의 유용성을 높인다는 관점 및 중요성 기준에 따라 유배당 퇴직연금도 IFRS 9상 상각후 원가로 평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2. 회계단위

[포트폴리오]

Q 2.1

"유사한 위험(similar risks)"의 실무적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

방안 1

- ◆ 사망보험, 건강보험(사망 외 보장), 연금보험 및 저축보험 세 가지로 구분
 - 유사한 위험을 주된 보장급부로 해석
 - 포트폴리오를 세분화할수록 상품 및 계약자의 성격이 고려된 세밀화된 가정 적용이 가능하나, IASB는 포트폴리오의 과도한 세분화는 운영상의 부담 가중 및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저해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며 포트폴리오의 지나친 세분화를 지양하고 있음

- ◆ 생명보험의 특성상 연금보험과 비연금보험 두 가지로 구분
 - 유사한 위험을 급부의 성격에 따라 사망, 생존으로 구분



"함께 관리(managed together)"의 실무적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

방안 1

- ◆ 배당 여부(유/무), 상품 특성(변액보험/자산연계/일반/기타), 그리고 연결자회사 등으로 구분함
 - 회계불일치 제거 목적으로 P/L 및 OCI법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등 회계정책 에 따라 추가적 세분화 가능
 - 회계모형(Non-Par/Indirect/VFA/PAA) 및 금융위험을 증번별로 판단하기 위해 계약집합에서 구분

방안 2

- ◆ 배당 여부(유/무), 상품 특성(변액보험/자산연계/일반/기타), 회계모형(Non-Par/Indirect/ VFA/PAA) 그리고 연결자회사 등으로 구분
 - 회계불일치 제거 목적으로 P/L 및 OCI법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등 회계정책 에 따라 추가적 세분화 가능
 - 회계모형 및 기초항목 성과 연동 여부는 계약집합 수준에서 구분 적용하거나, 함 께 관리의 특성으로 구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 일반계정, 특별계정-변액, 특별계정-비변액(연금저축, 자산연계형)으로 구분
 - 연금은 변액연금, 연금저축, 일반연금으로 구분, 비연금은 변액연금 제외한 변액 보험, 일반연금 제외한 일반보험, 자산연계 저축보험 등으로 구분
 - 현재 감독규정에 따라서 특별계정과 일반계정의 구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계정간 구분회계를 적용하고 있음

- 보험부채 및 성과도 계정별(일반계정 vs 특별계정)으로 분류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의 자금거래도 엄격하고 구분하고 있음
- 포트폴리오로 구분한 특별계정(변액 및 퇴직 제외)의 연금은 연금 저축이며, 특별계정(변액 및 퇴직 제외)의 비연금은 자산연계형 상품임



주계약의 위험특성은 유사하나 부가된 특약이 다른 계약들을 하나의 포트 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는가?

- ◆ 주계약의 주된 보장급부 성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분
 - 주계약의 사고급부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약의 부과에 상관없이 하나의 상품 내의 계약은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분류됨
 - 국내 생명보험계약은 주계약과 특약의 위험이 복합적으로 설계되어 실질적으로 계약별 위험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주·특약을 고려한 대표위험의 인위적 구분은 회계측정의 왜 곡현상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특약개수 및 위험수준은 포트폴리오 내부 안에서 수익성 기준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

[계약그룹]

Q 2.4

계약그룹 판단단위 및 시점은 어떻게 되는가?

* 손실그룹 판단단위(증번, set of contract)와 수행시기(상품개발, 판매시점), 판단에 적용되는 가정(상품개발, 판매시점)은?

방안

- ◆ 상품판매 시점(결산시)에 개별계약(증번) 별로 수행함(사후 평가)
 - 계약세트(set of contracts) 내의 모든 계약이 같은 집합에 포함될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계약 세트 단위 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는 선택사항이며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필 요로 함
 - 선택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개별계약(증 번)단위로 판단하며, 적용 가정은 상품 판매시점의 가정을 적용
 - 다만, 계약 세트에 따라 상품개발시점에 판단하는 안을 고려할 필요(사전 평가)
 - 계약별로 그룹을 결정할 경우 현재의 보험료 산출 실무(상품단위 수익성 분석) 와 맞지 않고 계약단위로 그룹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발생하 므로 계약세트 단위로 판단할 수 있는 적정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
- ◆ 포트폴리오를 수익성에 따른 세분화 시에는 주계약/특약의 RA와 CSM 규모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되, 포트폴리오를 '주계약'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계약(증권번호)의 주계약/특약이 대부분 동일 계약그룹에 속함

• 판단시점 : 매월말 결산시

• 대상계약 : 매월 신계약



계약그룹(손실부담계약그룹, 손실부담으로 전환가능한 그룹, 이익계약그룹)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 손실부담계약그룹을 CSM이 음수(→)인 계약으로 우선 식별하고, CSM이 양수(+)인 계약은 이익계약그룹(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과 기타계약 그룹(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있는 계약)으로 구분함
- ◆ CSM이 수익성 수준을 나타내고 RA의 x%를 CSM을 조정하는 변동성의 대용치로 보아, CSM과 RA의 x%를 비교하여 CSM이 RA의 x%보다 클 경우 이익계약그룹으로 분류하고, CSM이 RA의 x%보다 작을 경우 기타계약그룹으로 분류함
- ◆ RA의 x% 비율은 기업의 내부보고에서 제시한 정보를 사용하고, 손실부담계약이 되게 하는 가정의 변동 가능성에 근거한 평가가 필요함



Cohort의 실무 결정 방안(월별/분기별/연별)은?

- ◆ 그룹에 속한 계약의 계약일자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 CY기준 연단위 적용하는 방안이며 세분화(월/분기/반기) 가능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품의 특성이 다르다면 연도내에서도 세분화의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지만 할인율 등 금융변수에만 영향을 받는다면 추가적인 세분화로 인한 장점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3. 회계모형

[VFA 요건 검토]

▶ 요건 1: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에 일정 몫에 참여



VFA 요건 (1)의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 의미 및 보유여부는?

- ♦ 상품별로 기초항목은 아래와 같이 정의 될 수 있음
 - 전통형 유배당 : 계약자 적립금 (성과 : 유배당 이익)
 - 금리연동형 : 계약자 적립금 (성과 : 공시기준이율)
 - 변액 : 특별계정 펀드
- ◆ IFRS 17 B106에 따르면, 요건 1 충족을 위해 회사는 기초항목을 반드시 보유할 필요는 없음
 - 예를 들어, 급부금이 외부 지표(index)에 연계되어 있다면 외부지표도 기초항목이 될 수 있음

▶ 요건 2 : 기초항목 공정가치 중 상당한 몫에 참여



VFA 요건 (2)의 상당한(Substantial)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상당한(Substantial)" 이라는 문구는 회사가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기초항목에 연계하여 지급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계약자에게 지급되어지는 비율을 의미
 - VFA 대상이 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성과의 작은 부분을 구성할 것이므로 계약 자에게 지급되는 성과는 기초항목의 공정가치분 중 대부분을 차지 할 것으로 예상
- ◆ 상당한의 비율은 회사마다 투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기준에 의거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상당한 몫"의 실무 예시는 아래와 같이 정의 할 수도 있음
 - 전통형 유배당 : 유배당 이익 90%를 계약자에게 지급
 - 금리연동형 : 공시기준이율 75%~125%(또는 80~120%)를 계약자에게 지급 ('17.1월 이전 판매분)
 - 변액:특별계정 펀드 수익의 100%를 계약자에게 지급

▶ 요건 3 : 계약자 지급금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

Q 3.3

VFA 요건 (3) 상당한 비율은 어떻게 해석 되어야 하는가?

- ◆ 상당한 비율의 양적근거는 회사의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상당한 비율의 양적근거를 회사 내부적으로 정하는 경우,
 - 아래 항목에 대한 고려가 필요
 - ① 기초항목으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 변동과 회사가 예상하는 계약자 지급액 변동을 기준으로 판단
 - ② 계약 전기간 현재가치로 평가된 확률 가중평균 기준으로 상당한 비율을 판단 단, 확률 가중평균 산출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함
 - ③ 모든 시나리오의 확률 가중평균시 최저보증 및 Bonus(예, 계약자 배당 등) 수 주을 고려하여야 함
 - 최저보증수준이 높을수록 Bonus 수준이 낮을수록 VFA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보험부채 인식 및 측정



보험부채 인식 및 측정

4. 현금흐름

Q 4.1

현행 재산관리비는 IFRS 17 이행현금흐름 항목에 포함되는가? (약대 대출관련 재산관리비 포함)

방안

◆ 회계모형과 무관하게 보험부채와 관련성이 명확한 현행 재산관리비(예, 약대 관리비용, 변액펀드 위탁비용 등)만 보험부채 현금흐름에 반영



재량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실무적 방안은 무엇인가?

방안 1

- ◆ 공시이율 중 회사의 Spread (조정률) 변동 부분에 따른 현금흐름
 - '17.1월 이전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공시기준이율 80%를 초과하는 지급분을 재 량현금흐름으로 간주하고, '17.1월 이후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최저보증 수준 이상 지급하는 부분을 재량현금흐름으로 간주
 - 약관에 명시된 공시기준율의 범위(90~110%)를 재량 현금흐름의 결정 기준으로 해석하여, 공시이율에 내재된 잠재 목표수익률(target margin)을 약정된 기준으로 설정함, 즉 target margin의 변동을 재량현금흐름으로 결정

- ◆ 할인율 가정변동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시이율 변동분을 재량변동효과 변동분으로 추정
 - 공시이율 가정 변경중 재량변동 부분은 당기 금융비용이 아닌 CSM 조정대상으로, 비금융 변수에 의한 변동을 모두 포함함. 즉, 공시이율 추정과 관련한 모델 및 변 수 중 시장에서 조회되는 당기 금융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여 CSM 조정대상임 (예: 회귀분석 모델 및 회귀변수의 변동)
 - 만일 재량권의 범위를 좁게 정의하여 비금융 변수에 의한 변동(예를 들어 장래 공시이율 모델 변경 등)을 모두 포함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추가적으로 구분/산출하여 CSM 조정금액에 합산할 필요



신계약비의 정의는 무엇이고 직접 신계약비에 포함되는 비용 vs 포함되지 않는 비용의 예시는 무엇인가?

방안 1

- ◆ 신계약비의 정의: 보험계약집합의 판매, 인수심사, 개시 관련 원가
 - 직접 신계약비에 포함되는 비용: 비례수당, 비(非)비례수당, 점포운영비, 배분된 인거비 등을 포함
 - 포함되는 항목 : 수수료, 모집인등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점포경영, 조직양성, 업적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사업비 등
 - 포함되지 않는 항목: 개별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시킬 수 없는 비용과 비경상 적인 비용(예: 광고선전비(이미지광고), 교육훈련비, 접대비, 회의비 등임)

- ◆ 직접비 중 계약판매, 심사, 보험계약 개시에 소요되는 원가
 - 신계약비의 정의 : (1안)과 동일
 - 직접 신계약비 제외항목 : 비(非)비례성 고정수당, 육성관련 수당, 교육훈련, 광고 선전, 독려관련 비용



이행현금흐름에 포함되는 보험료 관련 세금과공과 비용의 정의 및 예시는 무엇인가?

- ◆ 세금과 분담금은 사업비로 간주하여 현금흐름에 포함하나, 제3자를 대신하여 (수탁자의 자격으로) 대신 납부하기 위하여 수납한 세금은 수익에서 차감
 - 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조세 및 준조세 교육세, 예금보험료, 분담금. 협회비 등이 이행현금흐름에 포함
- ◆ 보유계약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에 귀속시킬 수 있는 거래 관련 세금 및 분담금은 계약의 경계 내의 현금흐름에 해당한다고 명시
- ♦ 이에 따라. 기준서가 명시하고 있는 거래 관련 세금 및 분담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요구됨
 - ① 거래관련 세금(보험료 관련 세금, 부가가치세,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세금 등)
 - 현행 사업비 계정상 부가가치세나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세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기준서가 명시하고 있는 "보험료 관련 세금"이 현행 사업비 계정 중 "세금과 공과"로 분류되고 있는 항목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 ② 분담금(화재분담금, 보증기금분담금)
 - 예금보험료, 분담금, 협회비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직접유지비 가정에 포함 되어 미래현금흐름에 반영됨
 - 현행 사업비 계정 분류상, 협회비는 일반관리비 내 "협회비" 계정으로 분류, 예금보험료 및 감독분담금은 일반관리비 내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분류

- ◆ 사업비 가정에 반영되어 현금흐름에 포함되는 세금 및 분담금에는 제3자를 대신하여 수취 한 거래기반 세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익에서 제외할 거래기반 세금은 존재하지 않음
- ※ (예시) 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조세 및 준조세인 교육세, 예금보험료, 분 담금 및 협회비등이 이행현금흐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

5. 할인율

[할인율 형태]



기초자산 성과에 연동되는 현금흐름은 어떻게 할인하는가?

- ◆ 기초항목 성과에 연동되는 현금흐름 (단, 최저보증 효과가 없는 경우 가정)에 적용될 할인 율은 아래와 같음 [IFRS 17 B74 (b)]
 - 변동성을 반영한 할인율을 이용하여 현가 산출
 - 현금흐름은 기초항목의 위험 수익률(Risky returns: 예, Risk premium)에 기 반하여 추정
 - 변동성 효과를 현금흐름에서 조정하고 그 조정효과가 반영된 할인율로 현가 산출
 - 단일 무위험 할인율(또는 무위험 할인율 곡선)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무위험 기반의 할인율을 이용하여 현가 산출



기초항목 성과에 연동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현금흐름을 분리해야 하는가? 만약 분리하지 않는다면, 기초자산 성과에 일부 연동되는 보험계약의 평가방법은?

- ◆ 회사는 기초항목에 연동되는 현금흐름과 그렇지 않은 현금흐름을 분리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음
 - 단, 분리하지 않는다면 IFRS 17 기준서 문단 B77에 따라 전체 현금흐름(연동되는 현금흐름 + 연동되지 않는 현금흐름)에 적절한 할인율 추정하고 확률론적 결정기 법을 활용하여 BEL을 산출
- ◆ 현금흐름 분리하지 않는 경우, Risk-neutral 시나리오 기반의 Stochastic Model을 활용하여 보험계약 BEL 산출
 - 무위험 할인율 곡선을 바탕으로 산출한 이율코드별 공시기준 이율을 기준으로 ESG(economic scenario generator)를 활용해 확률론적 할인율 시나리오를 산출하고 각 시나리오의 NPV의 평균값 산출



계약그룹(손상계약/이익계약 등) 결정시 적용되는 할인율은 무엇인가?

방안 1

- ◆ (Step 1) 최초 인식시점 경제적 가정(예, 해당월 Yield Curve 할인율, 금리 시나리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신계약 Stochastic BEL과 동일한 값이 산출되는 신계약 EIR BEL를 추정
 - 신계약 EIR BEL :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단일률(EIR) 기준의 공시이율이 적용된 신계약의 현금흐름을 동일한 단일률(EIR)로 할인한 값과 신계약 Stochastic BEL 의 합산 값이 일치되도록 하는 신계약 EIR을 산출한 후, 신계약 EIR을 적용하여 산출한 BEL
- ♦ (Step 2) 신계약 EIR BEL의 기준으로 Shock BEL을 산출하여 신계약 RA를 추정
- ◆ (Step 3) 신계약 EIR BEL 및 RA 기준으로 보험계약 GoC(group of contracts) 결정
- ※ 기준서는 상위레벨에서 산출한 이행현금흐름을 계약그룹 또는 추가적인 세분 단위에 배분 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계약그룹 보다 상위레벨에서 산출한 EIR 할인율을 계약그룹 결정시 적용하더라도 기준서 부합여부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계리적 가정도일반적으로 계약그룹 보다 상위레벨에서 산출/적용)

- ◆ 최초 인식시점 현행 수익률 곡선(Yield curve, 금리 시나리오)에 근거한 신계약 Stochastic BEL과 RA* 기준으로 보험계약 GoC가 결정됨
 - * 단, RA는 Stochastic 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Deterministic BEL을 기준으로 Shock BEL을 산출하여 신계약 RA를 산출
 - 신계약 Stochastic BEL+RA > 0 → 손실그룹
 - 신계약 Stochastic BEL+RA 〈 0 → 이익 또는 기타그룹

[신계약 그룹 통합단위(할인율 적용 단위) 및 가중 평균 방법론]



계약 그룹 최초 할인율은 어떻게 결정 되는가?

방안 1

- ◆ Q5.3 (방안 1)에서 언급된 월별 신계약 EIR을 해당월 신계약 EIR BEL로 Cohort 기간 동안 (예. 1년, 분기 등) 가중평균
 - Annual Cohort 적용시 GoC 최초 할인율 산출 예시
 - * 1월 신계약 EIR x 1월 신계약 BEL + · · + 12월 신계약 EIR x 12월 신계약 EIR BEL

1월 신계약 BEL + · · + 12월 신계약 BEL

※ 가중치를 해당월 신계약 EIR BEL이 아닌 가입금액 또는 보장단위 등을 고려하는 방안도 존재

방안 2

◆ 동일 수익성 그룹(1년 내)에 대해 가중평균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잠정결정.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아래 참고

(가중평균 예시 1)

구분	최초측정 할인율 산출	EIR 적용 그룹BEL	비고
1월 신계약	Stochastic BEL(1월) = 1월계약 CF @ EIR(1월)	그룹BEL = 1월계약 CF (1월이후) @ EIR(1월)	
2월 신계약 유입	그룹 BEL(1월말)@ EIR(1월) + Stochastic BEL(2월) = [1월계약 CF(2월1일~) + 2월계약 CF] @ EIR(1~2월)	그룹BEL = [1월계약 CF(2월1일~) + 2월계약 CF] @ EIR(1~2월)	그룹단위 BEL 변화없음. 단, 계약별 BEL은 변화
3~12 월	2월과 동일하게 수행		

(가중평균 예시 2)

구분	최초측정 할인율 산출	EIR 적용 그룹BEL	비고
1월 신계약	Stochastic BEL(1월) = 1월계약 CF @ EIR(1월)	그룹BEL = 1월계약 CF(1월이 후) @ EIR(1월)	
2월 신계약 유입	Stochastic BEL(1월) + Stochastic BEL(2월) = [1월 계약 CF + 2월계약 CF] @ EIR(1~2월)	그룹BEL = [1월계약 CF(2월1일 ~) + 2월계약 CF] @ EIR(1~2 월)	그룹단위 BEL 변화분 PL처 리
3~12월	2월과 동일하게 수행		

(가중평균 예시 3)

구분	최초측정 할인율 산출	EIR 적용 그룹BEL	비고
1월 신계약	Stochastic BEL(1월) = 1월계약 CF @ EIR(1월)	그룹BEL = 1월계약 CF(1월이 후) @ EIR(1월)	
2월 신계약 유입	Stochastic BEL(2월) = 2월계약 CF @ EIR(2월) EIR(1~2월) =W · EIR(1월)+(1-W) · EIR(2월) W는 월별단순평균, BEL, 건수, Coverage Unit 등을 고려	그룹BEL = [1월계약 CF(2 월1일~) + 2월계약 CF] @ EIR(1~2월)	그룹단위 BEL 변화분 PL처 리
3~12월	2월과 동일하게 수행		

방안 3

◆ 보험계약그룹의 최초할인율은 가중평균하지 않고 개별(주계약/특약) 필요이자율을 산출하 여 이자비용을 산출함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방법]



IFRS 17 유동성 프리미엄 실무 산출방안은 ?

- ◆ 회사채 수익률은 무위험 채권의 수익률에 위험 프리미엄이 가산되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위험 프리미엄에는 신용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유동성 프리미엄과 장단기 스프레드및 세금 등 요인과 관련된 프리미엄이 포함됨
 - (⇒) 따라서, 유동성 프리미엄의 예상 비중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채 수익률 분해 가 필요
- ◆ 수익률 분해법은 통계 모형을 적용하여 회사채 만기별로 산출한 유동성 프리미엄이 차지 하는 예상비중을 활용하는 방법임
 - 시잣에서 관측되는 스프레드 x 유동성 프리미엄 예상 비중
 - 시장에서 관찰되는 스프레드 : 시장에서 관찰되는 회사채 수익률(Spot rate)에서 만기가 동일한 국고채 수익률을 차감한 값
 - 유동성 프리미엄 예상 비중 : 평가 시점에서 예상되는 회사채의 스프레드에서 유동성 프리미엄이 차지하는 비중
- ◆ 회사채 수익률 분해는 Fama-French 3요인 모형(통계모형)을 통해 아래와 같이 이루어짐
 - (1단계) 회사채 스프레드를 세가지 설명변수(장단기, 신용, 정부 보증채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회귀계수(베타, 리스크)를 종목별로 추정
 - 장단기 스프레드: 장기 국고채 수익률 단기 국고채 수익률
 - 신용 스프레드: 회사채 수익률 정부보증채 스프레드
 - 정부보증채 스프레드: 정부보증채스프레드 국고채 수익률

• (2단계) 종목별 스프레드와 앞에서 추정한 베타들을 이용하여 회귀계수(감마, 리스크의 가격)를 추정하고 평가시점의 예상되는 프리미엄을 회귀계수를 곱하여 산출 (베타 x 감마)

- ◆ 관련기관(금융감독원, CEIOPS(유럽보험 및 직업연금감독위원회)) 및 논문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방법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적합한 하나의 방법 선택하여 적용
- ※ Covered bond, 사모사채 스프레드, CDS Negative-basis 방식 등

6. 위험조정

Q 6.1

Non-financial risk에 포함되는 리스크는 무엇인가?

- ♦ Non-financial risk에 포함되는 위험은 5가지 : 사망, 장해질병, 장수, 해지 및 사업비
 - 대재해, 대해약 및 재량권 위험은 Non-financial risk 대상에서 제외



위험조정 산출시 계약간 부의 상계효과를 반영하는 단위?

방안

◆ 일반적으로 위험조정 산출시 계약간 부의 상계효과를 전사 기준에서 반영하나, 해지 위험 의 경우 전사보다 세분화된 단위로 상계효과 반영 (포트폴리오 또는 개별 계약 단위)



최초인식 시점에 위험조정 분산효과 반영 방법은?

방안 1

- ◆ 전사 수준의 분산효과가 반영된 기시(전기말) 포트폴리오의 "기시(전기말) RA 배분계수"를 사용하여 신계약의 증번별 분산효과 반영 후 RA 산출
 - 최초인식(신계약)의 경우 전사 수준의 분산효과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 오의 기시(전기말) RA 배분계수 활용
- ※ 기시(전기말) RA 배분계수 = (포트폴리오의 기시(전기말) 증번별 분산효과 반영 후 RA 합계) / (포트폴리오의 기시(전기말) 증번별 분산효과 반영 전 RA 합계)
- ※ 최초인식(신계약)의 증번별 분산효과 반영 후 RA = 신계약의 증번별 분산효과 반영 전 RA * 기시(전기말) RA 배분계수

- ◆ 회사 전체의 기시(전기말) RA 배분계수를 신계약 RA에 적용 단. RA배분계수는 리스크별 적절한 Driver를 선정하여 산출
 - 현금흐름 Run time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
- ※ 리스크별 기시(전기말) RA 배분계수 = (리스크별 회사 전체의 기시(전기말) 증번별 분산효과 반영 후 RA 합계) / (회사 전체의 기시(전기말) 리스크별 Driver 합계)
- ※ 리스크별 Driver 예시
 - 사망: 장래 순보험금 합계
 - 해지 : 장래 해지화급금 합계 등
- ※ 최초인식(신계약)의 증번별 분산효과 반영 후 RA = 신계약의 증번별 Driver * 기시(전기말) RA 배분계수



연동형 계약 RA 산출시 사용되는 현금흐름/할인율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 ◆ Base 및 Shock 반영 BEL 산출시 확률론적 평가의 적용 여부는 회사별로 위험조정의 범위/정의에 달린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Base 현금흐름과 Shock이 반영된 현금흐름간 차이로 산출되는 위험조정의 특징상 Base/Shock간 일관성이 확보되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단, 결정론적 평가시 현금흐름과 할인율간 일관성은 위험조정 뿐만 아니라 최적추 정부채에서도 확보되어야 할 사항임

※ RA 산출시 고려사항

* RA산출방식: Stochastic Run vs. Deterministic Run

* 할인율형태 : 무위험 Yield Curve vs. EIR

* 할인율특징 : BEL과 동일 vs. 차등

* 공시이율 : 무위험 Yield Curve vs. EIR 기반

받안 1

- ◆ TVOG 포함된 Deterministic CF와 TVOG 포함 할인율 활용
 - EIR BEL 현금흐름에 위험별 Shock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RA를 산출
 - * EIR BEL(신계약/시가 EIR BEL) 관련 내용은 Q7.9 대안(1) 참고
 - 즉, 최초인식 및 후속측정의 RA 산출을 위한 Shock BEL 계산시 과도한 시스템 연산량 증가를 막기 위해 Stochastic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지 않고, EIR BEL (신계약/시가 EIR)기준 현금흐름을 활용(동 현금흐름에는 TVOG 효과가 포함 되어 있음)

- (1) 신계약 포트폴리오 관련 Stochastic BEL(Yield curve 적용)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EIR BEL(신계약/시가 EIR)을 산출
- (2) (1)에서 산출된 EIR BEL(Base BEL)상 현금흐름에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Shock BEL을 산출
- (3) (2)에서 산출한 Base BEL과 Shock BEL를 활용하여 증번별 분산효과 반영전 RA 를 산출
- (4) RA 배분계수(전사RA개별계약으로 배분하는 비율)를 적용하여 증번별 분산효과 반영후 RA 산출

- ◆ TVOG 미포함 Deterministic CF와 TVOG 미포함 할인율 할용
 - RA는 비금융위험(보험위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것이며, 비금융위험의 위험조정에 적용될 할인율은 금융위험이 포함된 현금흐름에 적용되는 할인율과 별도로 구분하여 추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

7. 후속측정

[CSM 상각]

Q 7.1

보장단위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

- ◆ 보장단위(Coverage units)는 집합 내 계약이 제공하는 보장의 양 (quantity of benefits)과 기대보장 듀레이션(expected coverage duration)으로 구성되어 있음
 - (1) 급부의 양은 상품 특성에 따라 서비스 이전의 양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항목은 상이 할 수 있으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연환산 영업보험료, 연환산 위험보험료 방식(예상지급 보험금), 보장금액, 기대현금흐름 및 보유계약건수 등이존재
 - * 추가적으로, 직접 참가특성이 존재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 급부의 양 결정시 투자요소가 제외되어 산출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음
 - (2) 기대보장 듀레이션은 유지율이 반영된 보험만기로 추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
- ◆ 포트폴리오 또는 상품별로 가장 적합한 보장 단위를 결정하여 적용이 필요하며, 보장단위 산출 예시는 아래와 같음
 - ① 연환산 영업보험료 : 영업보험료 납입기간과 납입주기를 반영한 총 영업보험료를 보장기간으로 환산하는 방식
 - 보장금액 산출식 : 영업보험료×보험료 납입기간×연간보험료 납입횟수 / 보장기간(연단위)
 - ② 연환산 위험보험료: 모델링 현금흐름을 고려한 시점별 기대보험요소의 연평균금 액에 가입금액 기준의 순수 보험요소비율을 고려해 보장단위 산정
 - 보장금액 산출식 : 경과기간별 예상지급보험금 합계 / 잔여보장기간(연수)×시

점별 가입금액 비율

- * 예상지급보험금 = 유지율이 감안되지 않은 경과기간별 예상지급보험금
- * 잔여보장기간 = 평가시점 계약의 잔존 보장 기간
- * 시점별 가입금액 비율은 투자요소가 있으면서 직접참가 특성이 없는 계약일 경우에 만 존재
- * 시점별 가입금액 비율 = (시점별 가입금액 시점별 투자요소) / 시점별 투자요소
- ③ 기간 별 계약 상 최대보장금액(Sum assured)
 - 보험 상품구조가 복잡한 경우 (예, 복합 담보 존재, 보장요소와 투자요소의 결합 된 형태 등) "최대보장금액"이 실질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 ④ 기대현금흐름[보유계약건수×(예상보험금(보험요소) + 예상사업비)]
 - 최대 보장금액의 방안으로 예상 보험금과 예상 사업비로 구성 기대 현금흐름을 급부금의 양으로 판단함
- ⑤ 보험계약 수(Passage of time)
 - 해지 및 사망률을 반영한 잔여계약건수를 보장단위로 판단함

Q 7.2

CSM 상각시 보장단위에 시간가치가 반영되어야 하는가?

방안

◆ 화폐의 시간가치 반영이 필요

- IFRS 17에서는 보장단위 산출시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는 기업의 판단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CSM은 최초 인식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계산되며, 후속 측정시에 도 Locked—in rate으로 부리되고 있기 때문에 Coverage unit에 화폐의 시간가치 가 반영되어야할 것으로 판단



보장단위 결정시 투자요소(해약환급금)이 차감되어야 하는가?

- ◆ IASB TRG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바로는 일반모형(GM)의 경우 VFA와 달리 투자 관련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변동수수료접근법(VFA)의 경우, 보험서비스와 투 자관련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판단함
- ◆ 따라서, GM모형의 경우 Q7.1의 (방안 1)에서 제시한 ①~④안에 따라 보장단위를 산출하는 경우 투자요소를 제외하고 보험요소만 고려
 - 다만. ⑤안(계약 건수)에 의해 상각하는 경우 투자요소가 별도로 차감되지 않음

Q 7.4

보장단위 결정시 유지율도 고려되어야 하는가?

- ◆ '18년 2월 TRG에서는 보장단위가 오직 집합 내 계약들의 기대만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까지 보험사건의 발생 경향을 반영해야 한다고 논의됨
 - ⇒ 해지율, 탈퇴율 등은 기대만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지율이 고려된 보장단위 결정



하나의 증권번호에 만기가 다른 주/특이 존재하는 경우, 증권별 보장단위 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방안

◆ 주계약 및 특약별로 기대보장 듀레이션 및 보장급부의 양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해 증권별 보장단위 측정



보장단위는 매 결산 시점마다 재산출 되어야 하는가?

- ◆ 보험계약집합(GoC)에 계약의 편입과 제거가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당기 제공 보장단위와 미래 제공 보장 단위를 재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Cohort 확정 전에는 보험계약집합 내에 지속적으로 신계약이 편입되기 때문에 당기 제공 보장단위 수가 변경하게 됨
 - Cohort 확정 이후 보험계약집합 집합 내에 더이상 신계약의 편입이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해지 및 소멸에 따라 제거되는 계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 경 우 미래 제공 보장단위 수가 변경하게 됨
- ◆ 즉, Coverage Unit을 구성하는 현금흐름의 변동(가정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Cohort 확정 전에는 당기/미래 제공 보장단위가 매 결산시점마다 달라지게 되며, Cohort 확정 이후에는 미래 제공 보장단위가 매 결산 시점마다 달라지게 됨
 - (⇒) 이에 따라, Coverage Unit은 매 결산시점 마다 재산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CSM 조정]

Q 7.7

투자요소의 실무 구분방안은 무엇인가?

방안

- ◆ 상품별 투자요소 실무 구분방안은 아래와 같음
- ① 연금상품 외의 상품

구분	투자요소	
보험금	만기보험금	
환급금	해지환급금, 실효환급금, 사망(사고) 당시 해약환급금, 생존급부금	
배당금	금리차보장금, 위험률차배당금, 이차배당금, 비차배당금, 장기유지 특별배당금	

② 연금상품

- 연금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경우, 제2보험기간의 유지율 계산시에는 일 반적으로 사망/탈퇴가 반영되며, 연금개시 이후 연금지급의 형태별로 일정기간 내 (확정/상속형: 연금개시 이후, 종신형: 보증기간내)의 사망자에게는 일정 해지 환 금금(사망 당시 준비금)이 지급됨

구분			투자요소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확정연금형,	연금개시 전	해지환급금, 사망 당시 해지환급금
	연금개시 후	연금지급액, 사망 당시 해지환급금	
크미	77 715	연금개시 전	해지환급금, 사망 당시 해지환급금
금리 종신형 연동 (보 증금 액부) 형	연금개시 후	연금지급액(보증금액 도달시점까지), 사망 당시 해지환급금(보증금액 도달시점까지만 발생)	
	조시청	연금개시 전	해지환급금, 사망 당시 해지환급금
(!	종신형 (보증기간부)	보증기간 내	연금지급액, 사망 당시 해지환급금 (보증기간 내에만 발생)
금	리확정형	연금개시 전	해지환급금, 사망 당시 해지환급금

- ※ 보증기간부 종신형 상품의 보증기간 이후 연금지급액과 금리확정형 상품의 2보기(연금개시) 이후 연금지급액은 생존시에만 지급하므로 생존을 보험사건으로 보아 보험요소로 구분
 - ③ 그 밖의 투자요소 : 중도인출금,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계약자 적립금에 기초 하여 보험사건과 무관하게 지급하므로 투자요소로 구분함



아래 항목들의 예상/실제 차이에 대한 실무 처리 방안은?

- ◆ 공시이율 예상/실제 차이는?
- ◆ 계약자 배당 지급액의 예상/실제 차이는?
- ◆ 보험료의 예상/실제 차이는?
- ◆ 보험료와 연관된 현금흐름의 예상/실제 차이는?

- ◆ 공시이율 예상/실제 차이는?
 - (⇒) 금융손익(P/L)로 처리됨
 - * 예상/실제 공시이율이 반영된 BEL 차이값: P/L로 인식
- ◆ 계약자 배당 지급액의 예상/실제 차이는?
 - (⇒) 계약자 배당 산출기준 마련 후 추후 검토 필요
- ◆ 보험료의 예상/실제 차이는?
 - (⇒) CSM으로 조정
- ◆ 보험료와 연관된 현금흐름의 예상/실제 차이는?
 - (⇒) (좁은해석) 보험료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하는 수당만 CSM조정, (넓은해석) 수당 이외의 신계약비 중 보험료 관련 비용까지 CSM 조정, (더 넓은 해석) 세금과공과의 일부 항목까지 포함하여 CSM 조정

[보험부채 변동분석 순서]

BEL 변동분석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구분	설 명	
GoC 구분	 ◆ (Step 1) 신계약 Stochastic BEL과 동일한 값이 산출되는 신계약 EIR BEL을 산출 * 신계약 EIR BEL: 단일율(EIR) 기준의 공시이율이 적용된 현금흐름을 EIR로 할인한 값과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합산된 신계약 Stochastic BEL을 일치시켜주는 EIR을 산출 ** 포트폴리오 내 신계약 Stochastic BEL 합계 = 신계약 EIR 기준 현금흐름 (1+신계약 EIR)¹(1+t) ◆ (Step 2) 신계약 EIR BEL의 기준으로 Shock BEL을 산출해 신계약 RA를 추정 ◆ (Step 3) 신계약 EIR BEL 및 RA 기준으로 보험계약 GoC 결정 	
최초인식	 ◆ GoC 구분시 산출된 월별 신계약 EIR과 해당월 신계약 EIR BEL 기준으로 Cohort 기간동안 (예, 1년, 분기 등) 가중평균 * 2월 최초인식 할인율 (가중평균할인율) = 분자 / 분모 ** 분자: (1월 신계약EIR x 1월 신계약EIR BEL+ 2월 신계약EIR x 2월 신계약EIR BEL) 분모: (1월 신계약 EIR BEL + 2월 신계약 EIR BEL) 	
① 이자부리 및 Unwinding	 ◆ (신계약) GoC 구분시 산출한 신계약 EIR BEL 기준으로 이자부리 & Unwinding 수행 ◆ (보유계약) 전월 재산출 EIR BEL 기준으로 이자부리 & Unwinding 수행 * ⑧단계의 재산출 EIR BEL 참고 	

구분	설 명
♠ 시대코 UNIO HLCH	◆ ①에서 산출된 EIR BEL에 실제 공시이율을 반영해 공시이율 예정/실제 차이금액 산출 ◆ (신계약) 실제 공시이율이 반영된 예상
② 실제공시이율 반영	월말(t=1) 시점 신계약 EIR BEL (보유계약) 실제 공시이율이 반영된 예상 월말(t=1) 시점 재산출 EIR BEL
	 ◆ 전월 가중평균 할인율에 당월 신계약 EIR을 반영해 당월 가중평균 할인율을 산출 - (신계약) 신계약 EIR → 당월 가중평균(보유계약) 전월 가중평균 → 당월 가중평균
③ 최초 할인율 Update * Cohort 완성전에만 수행되는 프로세스	◆ 전월 가중평균 할인율(신계약의 경우 신계약 EIR)을 반영(현금흐름 및 할 인율)하여 산출한 BEL과 당월 가중평균 할인율을 반영(현금흐름 및 할인 율)하여 산출한 BEL 차이를 최초 할인율 변동효과로 간주 - Cohort 완성전에만 최초 할인율 변경효과가 발생하며, Cohort 완성 이 후에는 신계약 유입이 없기 때문에 최초 할인율이 변경되지 않으며 최 초 할인율 변경효과도 발생하지 않음
	◆ 당월 기중평균 할인율을 반영(현금흐름 및 할인율)하여 산출한 BEL을 ④ 계약속성/계리가정 변경 등 측정을 위한 Base BEL로 활용
④ 계약속성 및 계리적 가정 변경 (재량현금흐름 변동 효과 포함)	◆ ③에서 산출된 Base BEL에 계약속성(실제 유지자) 및 계리가정 변경 등을 반영
④-1 기말 원가BEL 산출	◆ ②에서 산출된 EIR BEL값에 ③~④의 변경효과를 합산하여 기말 원가 BEL 산출
⑤ 현행 BEL 산출	◆ 월말시점 Stochastic BEL 산출(월말 Yield Curve 기준으로 산출)
⑥ 경제적 가정 변경효과	◆ ⑤ 현행 BEL과 ④-1 기말 원가BEL 차이를 AOCI로 인식

구분	설 명	
⑦ 시가 EIR BEL 산출	 ◆ 단일율(시가 EIR)기준 공시이율이 적용된 현금흐름을 시가 EIR로 할인한 값을 ⑤ 현행 BEL과 일치시켜 주는 시가EIR을 산출 * ⑤ 현행 BEL = 시가 EIR 기준 현금흐름 (1+시가 EIR)^(1+t) ◆ 시가EIR BEL기준으로 Shock BEL을 산출해 월말 RA를 산출 	
® 재산출 EIR BEL 산출	 ◆ 시가 EIR BEL의 현금흐름을 재산출 EIR로 할인한 값과 ④-1 기말 원가 BEL을 일치시키는 재산출 EIR을 산출 * ④-1 기말 원가BEL = 시가 EIR 기준 현금흐름 (1+재산출EIR EIR)^(1+付) ◆ 다음달의 보유계약 이자부리시에 적용할 재산출 EIR 할인율 산출 	

[※] 분기에는 월결산 CSM과 분기 CSM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추가

구분	설 명	
GoC 구분	◆ 신계약 계약별 Stochastic BEL과 RA를 기준으로 그룹 판단 - Stochastic BEL은 확률론적 시나리오에 의하여 평가한 BEL - RA는 기시에 설정한 Factor를 사용하고 이 때 Driver는 Deterministic BEL의 현금흐름(결정론적 공시이율커브)을 이용하나 현가는 반영하지 않음	
최초인식	 ◆ GoC 구분에 적용한 계약별 Stochastic BEL과 RA를 기준으로 CSM 측정하여 최초인식 ◆ 후속측정을 위하여 Deterministic BEL 측정. Deterministic BEL의 할인율은 그룹내 계약의 Stochastic BEL의 합과 결정론적 공시이율커브를 이용한 Deterministic BEL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단일 할인율 산출하여 적용(그룹최초측정EIR) 	
그룹 최초측정EIR update	◆ 그룹완성 전 각월 신계약을 모두 고려한 평균 그룹최초측정EIR 산출하고 이 EIR을 적용한 변경효과를 이자비용(PL) 처리 -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각월 그룹최초측정EIR을 Coverage unit, BEL 등을 사용하여 가중평균하거나 기대현금흐름을 이용하여 Goal Seek 을 통한 EIR을 산출	
① 이자부리 및 Unwinding	 ◆ (그룹완성 전) 그룹 최초측정EIR을 기준으로 이자비용(PL) 인식, 예상현금흐름 Release 되면 측정EIR 적용한 예상BEL 산출됨 ◆ (그룹완성 후) 전월말 재산출 EIR을 기준으로 이자비용(PL) 인식, 예상현금흐름 Release 되면 전월말 재산출 EIR 적용한 예상BEL 산출됨 - ⑤단계의 재산출 EIR BEL 참고 ◆ RA는 예상BEL의 현금흐름에 factor 적용하여 산출하고 기시값과의 차이는 보험수익 인식 	
② 실제공시이율 반영	 ◆ 당기실제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예상BEL과 ①에서 산출된 예상 BEL의 차이를 이자비용(PL) 처리 ◆ RA는 당기실제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현금흐름에 factor 적용하여 산출하고 ①과의 차이는 보험수익 인식 	

구분	설 명
	◆ (그룹완성 전) 계약속성 및 계리적가정 변경으로 인한 그룹최초측정EIR 기준 BEL 변동분을 CSM 및 OCI 조정. 결국 계리적가정변경 후 OCI 계상 을 위한 기말원가BEL은 그룹최초측정EIR 기준
③ 계약속성 및 계리적 가정 변경 (재량현금흐름 변동 효과 포함)	◆ (그룹완성 후) 계약속성 및 계리적가정 변경으로 인한 그룹최초측정할인 율 기준 BEL 변동분은 CSM 및 OCI 조정. 재산출EIR 기준 BEL 변동분과 그룹최초측정할인율 기준 BEL 변동분과의 차이는 이자비용(PL) 및 OCI 조정. 결국 계리적가정변경 후 OCI 계상을 위한 기말원가BEL은 재산출 EIR기준
	◆ RA는 ③에서 산출된 현금흐름에 factor 적용하여 산출하고 ②와의 차이는 CSM 또는 계약속성 부분은 보험수익 인식
④ 경제적 가정 변경효 과	◆ ③에서 산출된 원가부채와 경제적가정 변경 후 Stochastic BEL과의 차이를 OCI처리 - 차년도 OCI재분류 금액 산출을 위하여 시가EIR BEL 산출. 시가EIR BEL은 경제적가정 변경 후 Stochastic BEL과 경제적가정 변경 후 Deterministic BEL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적용
	◆ 경제적가정 변경 후 RA 측정. ③과의 차이는 CSM조정
⑤ 재산출EIR BEL 산출	◆ (그룹완성 전) 불필요 ◆ (그룹완성후) ③의 결과와 ④의 Deterministic 현금흐름의 현가를 일치시 키는 할인율을 산출하여 차년도 이자비용 인식에 사용

구분	설 명
GoC 구분	◆ (Step 1) 최초Yield Curve 기준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계약 Stochastic BEL/RA를 산출 * 단, Deterministic BEL 기준으로 Shock BEL을 산출하여 RA를 산출 ◆ (Step 2) 신계약건별 CSM / RA를 비교하여 보험계약 GoC 결정
최초인식 할인율	◆ 신계약 Goc별 Stochastic BEL과 Deterministic 현금흐름을 집계, 현금 흐름을 일치시키는 집합별 최초인식 할인율(EIR) 산출
① 이자부리 및 Unwinding	◆ 방안(2)와 동일◆ 가중평균할인율 산출방법은 * Q5.4 방안(2) 참고
② 실제공시이율 반영	◆ 계약별 현금흐름에 실제 공시이율을 반영해 공시이율 예정/실제 차이금 액을 산출
③ 계약속성 및 계리적 가정 변경(재량현금호 름 변동효과 포함)	◆ ③에서 산출된 가중평균 할인율을 적용해 실제 유지자 등 속성 변경 및 계리가정 변경효과를 산출
④ 기말 원가BEL 산출	◆ ②에서 산출된 BEL값에 ③의 변경효과를 합산하여 기말 원가BEL 산출
⑤ 현행 BEL 산출	◆ 월말시점 Stochastic BEL 산출(월말 Yield Curve 기준으로 산출)
⑥ 경제적 가정 변경효과	◆ ⑤ 현행 BEL과 ④기말 원가BEL 차이를 AOCI로 인식
⑦ 재산출 EIR BEL 산출	◆ ④의 결과와 공시이율가정이 업데이트된 Deterministic 현금흐름의 현 가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산출하여 차기 이자비용 인식에 사용 - 차기 이자부리시 보유계약에 적용할 재산출 EIR 할인율 산출 ^{주)1}

주1) 발행 후 1년 동안 신계약 유입효과로 집합에 대한 최초인식 할인율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므로 집합의 자체 현금흐름 변동으로 인한 유효이자율 업데이트는 진행하지 아니함

♦ 일반 모형 BEL 변동분석

78	설 명		
구분	산출방법	회계처리	
기시 BEL(Market Value)	전기말 할인율 적용하여 산출	전기말 보험부채 계상	
(±)기시 누적 OCI 잔액 Reverse	フ 人 BEL(Market Value) ー フ 人 BEL(Book Value)	(차) OCI xx / (대) BEL xx 또는 (차) BEL xx / (대) OCI xx	
기시 BEL(Book Value)	계약연도(UY)별 최초적용 할인율 적용하여	산출	
(-)전기 보유계약 보험부분 예상 현금흐름	보유계약 보험부분 예정 현금흐름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등)	(차) BEL xx / (대) 수익 xx	
(-)전기 보유계약 투자부 분 예상 현금흐름	보유계약 투자부분 예정 현금흐름 (환급금, 연금지급금 등)	(차) BEL xx / (대) 가계정_투자요소 xx	
(+)이자비용	보유계약 예정 MP BEL (BookValue) - 기시BEL(Book Value) + 전기 보유계약 보험부분 예상현금흐름 + 전기 보유계약 투자부분 예상현금흐름	(차) 이자비용 xx / (대) BEL xx 연동형 (in-direct participation)의 경우에는 금리 평가차 발생	
신계약 BEL	신계약 현금흐름에 전기말 할인율을 적용 하여 산출 (Level Yield 적용)	최초시점 총부채가 "0"이나 보험부채 구성항목인식을 위한 회계처리는 필요 차) BEL xx / (대) RA xx CSM xx	
(-)신계약 보험부분 예상 현금흐름	신계약 보험부분 예정 현금흐름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등)	(차) BEL xx / (대) 수익 xx (차) 예상현금유입액 xx / (대) BEL xx	
(-)신계약 투자부분 예상 현금흐름	신계약 투자부분 예정 현금흐름 (환급금, 연금지급금 등)	회계처리 없음 (경험조정 산출 시 고려됨)	

78	설 명		
구분	산출방법	회계처리	
(+)이사비용	신계약 예정 MP BEL - 신계약 BEL + 신계약 보험부분 예상현금흐름 + 신계약 투자부분 예상현금흐름	(차) 이자비용 xx / (대) BEL xx 연동형 (in-direct participation)의 경우에는 금리평가차 발생 가능	
당기말 실제 MP BEL (BookValue, 전기말 가정 적용)	전기말 보유계약 및 신계약의 연말 시점 BEL	(차) CSM xx / (대) BEL xx 또는 (차) BEL xx / (대) CSM xx	
(±)경험조정	당기말 실제 MP BEL (Book Value, 전기 말 가정 적용) - 보유계약 예정 MP BEL (Book Value) - 신계약 예정 MP BEL (Level Yield 적용)	(차) CSM xx / (대) BEL xx (차) PL xx / (대) BEL xx	
(±)가정 변경 효과	당기말 실제 MP BEL (Book Value, 당기 말 가정 적용) - 당기말 실제 MP BEL (Book Value, 전 기말 가정 적용)	(차) CSM xx / (대) BEL xx 또는 (차) BEL xx / (대) CSM xx	
(±)재량현금흐름 구분	당기말 실제 MP BEL (Market Value, 당기말 가정 적용) - Target Margin 변동에 따른 효과 산출	(차) CSM xx / (대) BEL xx 또는 (차) BEL xx / (대) CSM xx	
(±)기말 누적 OCI 잔액	당기말 실제 MP BEL (Market Value, 당기말 가정 적용) - 당기말 실제 MP BEL (Book Value, 당기말 가정 적용)	(차) OCI xx / (대) BEL xx 또는 (차) BEL xx / (대) OCI xx	
당기말 실제 MP BEL (MarketValue, 당기말 가정적용)	당기말 실제 모델 포인트를 적용한 BEL (당기말 할인율 적용, 당기말 가정 적용)		



RA 변동분석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방안 1

◆ 시가 EIR BEL을 Base BEL로 간주해 Shock BEL 산출하여 RA를 산출하고 Q7.9 (방안 1) 의 BEL 변동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변동분석을 실시

- ◆ RA 변동은 보험수익과 CSM 조정으로 처리
 - ① 기말 잔존계약 예상 RA 기시 RA = 수익처리
 - ② 기말 잔존계약 실제 RA 기말 잔존계약 예상 RA
 - → CSM 조정 (BEL 변동분석과 동일하게 처리)
 - ③ 계약변경 효과 반영 후 기말 잔존계약 실제 $RA 기말 잔존계약 실제 <math>RA \to CSM$ 조정
 - ④ 계리적가정 업데이트 후 RA 계약변경 효과 반영 후 기말 잔존계약 실제 RA \rightarrow CSM 조정
 - ⑤ 경제적가정 업데이트 후 $RA 계리적 가정 업데이트 후 <math>RA \rightarrow CSM$ 조정

◆ Deterministic BEL을 Base BEL로 간주해 Shock BEL 산출

구분	설 명
기시 위험조정	전기 가정(최적가정, 충격시나리오) 및 전기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 위험조정
① 신계약 위험조정	신계약 유입으로 인한 위험조정 증가액 산출
② 이자부리 및 Unwinding	◆ 보유계약과 신계약 Deterministic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집합별 가 중평균할인율을 이용하여 산출
③ 보험서비스 비용 산출	◆ 당기 예상 원가 현금흐름에 기초 최적가정, 충격시나리오 적용당기 말 예상 원가 RA을 산출 (당기말 예상 원가 RA-전기말 원가 RA-당기 신계약 최초인식 RA-당기이자비용)
④ 계약속성 및 계리적 가정 변경 (재량현금흐름 변동효과 포함)	◆ 실제 유지자 등 속성 변경 및 계리가정 변경효과를 산출 (⇒) 변경효과는 CSM으로 반영
⑤ 기말 위험조정	◆ 당기말 가정(최적가정, 충격시나리오) 및 당기말 할인율을 적용하 여 산출 위험조정
⑥ 경제적가정 변경효과	◆ ⑤의 기말 RA와 ④ 당기 원가RA 차이를 AOCI로 인식



손익계산서 및 공시



손익계산서 및 공시

8. 수익/비용

[신계약비 수익/비용 처리방안]

Q 8.1

수익/비용으로 표시할 직접 신계약비는 예상 vs 실제 직접 신계약비인가?

방안

◆ 보험료 관련 직접 신계약비는 실제 신계약비 기준으로, 보험료 무관 직접 신계약비는 예상 신계약비 기준으로 수익/비용 인식



신계약비를 수익/비용으로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 신계약비는 보험계약그룹의 Coverage period 및 보유계약 수량에 따라 수익/비용으로 체계적으로 배분
 - 제거되는 보험계약의 신계약비는 보유계약 수량에 반영되므로 수익/비용은 보험 계약 그룹의 Coverage period 동안 인식됨

[이자비용]

- 고정형 계약 -



고정형 계약의 이자비용 산출방법 예시는?

- ◆ 고정형 계약의 이자비용은 최초 할인율에 기반해 산출하도록 언급되어 있으며 최초 시점 할인율은 Yield Curve 또는 EIR 모두 가능
 - (최초 Yield Curve 할인율) (할인율 곡선 앞 구간부터) Forward 금리 기준으로 이 자비용을 인식
 - (최초 EIR 할인율) 최초 EIR 할인율 기준으로 이자비용 인식

방안 1

- ◆ 최초인식시점 할인율 곡선을 단일률로 변환한 EIR 기준으로 이자비용 산출

- ◆ 최초인식시점의 결정된 할인율 기준으로 이자비용 산출
 - 시장에서 관찰되는 할인율은 기간구조가 존재하는 곡선과 일관되는 할인율임
 - 고정형 산출시 적용되는 최초할인율 곡선을 경과연도 ~ 100년을 이용
 - 최초 할인율은 자산 가치평가의 관습과 일관성 고려해 Spot rate이 아닌 Forward rate으로 해석됨

- 변동형 계약 -



EIR 할인율을 최초 할인율로 적용하는 고정형 계약의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경우 EIR 할인율의 재산출이 필요한가?

- ◆ IFRS 17 문단 87에 따르면, 이자비용[보험금융수익(비용)]은 아래의 보험계약 집합의 장부 금액 변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언급
 - (1)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 효과
 - (2) 금융위험 및 그 변동 효과
- ◆ 하지만, 고정형 계약은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험계약이므로 이자비용은 최초인식 시점 할인율을 적용함 (IFRS 17 문단 B72)
 - (⇒) 따라서, 계리적 가정 변경 등에 따라 고정형 계약의 현금흐름이 변동되더라도 이 자 비용은 최초시점 EIR할인율에 기반해 산출
- ◆ 단, Cohort 완성 전 GoC 최초 할인율을 가중평균으로 산출하는 경우 고정형 계약의 최초 EIR 변경은 가능



변동형 계약(특히, 공시이율형)의 경우,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에 따라 현금흐름 변경시 이자비용 할인율의 재산출이 반드시 필요한가?

- ◆ 기준서 문단 B130 ~ B132에 근거해, 공시이율상품의 경우 경제적 가정 변동으로 현금흐름이 변동됨에 따라 경제적 가정 업데이트 주기마다 EIR 할인율의 재산출이 필요
 - IFRS 9 상 금융위험 변동시 변동금리 채권의 유효이자율을 재산출하여 적용하는 점과의 회계적 일치성 확보 및 예상 부리 이자비용의 예측성 증대 등을 고려시 EIR 할인율의 재산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Q 8.6

변동형 계약의 이자비용 실무 산출방안은 무엇인가?

방안 1

◆ Q7.9 (방안1) BEL 변동분석 Step ⑧의 재산출 EIR을 적용하여 연동형 계약의 이자비용을 산출

방안 2

◆ Q7.9 (방안2) BEL 변동분석 Step ⑤의 재산출 EIR을 적용하여 연동형 계약의 이자비용을 산출

방안 3

◆ Q7.9 (방안3) BEL 변동분석 Step ⑦의 재산출 EIR을 적용하여 연동형 계약의 이자비용을 산출

9. 표시 및 공시

Q 9.1

중간재무보고의 보고 단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 ◆ 분기결산 재무제표를 중간재무보고 단위로 간주
 - K-IFRS 1034 '중간재무보고' 문단 28에서는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음
 - 반면, 이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IFRS 17 B137에서는 후속적인 중간 재무제표 또는 연차보고기간에 적용할 때, 기업은 종전 중간 재무제표에서 사용한 회계추정에 관한 처리를 변경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누적기준 아님)
 - 예를 들어, 기업A는 분기별로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기업B는 반기별로 중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A는 1분기에 손실부담계약집합을 인식하였지만 반기 기준으로는 손실환입을 인식할 수 있으며, 동일한 계약집합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B는 반기 기준으로는 손실부담계약집합 인식 및 손실환입을 모두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음
 - (⇒) 이러한 경우 동일한 계약집합을 보유하고 있는 두 기업이 보고 빈도에 따라 회계처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IFRS 17에서는 상기와 같은 회계처리 를 요구하고 있음



주석 공시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방안 1

- ◆ 일반적으로 공시정보의 통합수준은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따름. 이에 따라 유사한 항목 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구분표시하며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 하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 (보험) 계약유형(보험금지급형태)을 기반으로 공시통합의 기본요건인 포트폴리오의 정의를 충족하며 국내 감독기관의 포트폴리오 통합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시수준을 고 려함
 - ⇒ 변액, 자산연계상품 등 직접 참가적 특성이 있는 상품을 구분하고 이후에 보험상 품의 계약유형(보험금 지급형태)에 따라 구분 후, 하위 항목으로 관련 위험을 구분 예정 즉, 공시통합 수준은 다음과 같음
 - 사망, 건강/상해, 연금저축, 퇴직(유배당), 변액 및 자산연계, 기타(해외자회사 등)

방안 2

◆ 포트폴리오 수준





기타



기타

10 전화규정

[수정소급법]



수정소급법 적용시 실제 현금흐름을 예상 현금흐름 산출 방법에 맞추어 조정해야 하는가? (TVOG 산출, 직/간접 사업비 분류 등)

- ◆ 실제 현금흐름 관련 이슈
 - 최초시점 TVOG 재산출 하지 않음
 - 수정소급법 적용시 CSM 조정 과정이 없음
 - 즉, 예상과 실제가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실제 현금흐름 (예, 환급금)에 TVOG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주
 - IFRS 4 vs IFRS 17 사업비 항목 차이는 수정하여 산출
 - 전환시점 직접비 간접비 구분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현금흐름 내 사업비 항목을 재배분
 - 실제현금흐름 내 Real world → Risk neutral 기준 공시이율 변환 조정을 하지 않음
 - 예상현금흐름은 Risk neutral 기준으로 공시이율 반영되어 있고, 실제현금흐름은 Real world 기준으로 공시이율이 반영되어 있어 실제현금흐름 내 공시이율을 Risk neutral 기준으로 변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나 과도한 원가 및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됨

- ◆ 아래 기준서에 따라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실제 현금흐름을 예상 현금흐름 산출방법에 맞추어 추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관련 기준서 : C12.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 집합의 미래현금흐름은 전환일(또는 만약 문단 C4(1)을 적용하여 보다 이른 날에 미래현금흐름을 소급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보다 이른 그 시점)의 미래현금흐름 금액에,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과 전환일(또는 보다 이른 그날) 사이에 발생된 것으로 알려진 보험계약 집합의 현금흐름을 조정하여 추정한다. 발생된 것으로 알려진 현금흐름은 전환일 전에 소멸된 계약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공정가치법]



보험부채 공정가치 산출에 사용되는 이행현금흐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방안 1

- ◆ 공정가치법은 전환일의 CSM을 이행현금흐름과 IFRS 13에 따라 결정한 보험계약 집합의 공정가치 차이로 결정하는 것으로 기준서 상 정의하고 있으나 IFRS 13은 공정가치법의 원 칙 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있음
 - 현재 업계에서 논의 되고 있는 공정가치 적용방안은 아래의 두 가지 방안이 있으며, 공정가치 적용방안에 따라 이행현금흐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에 차이가 있음

방안 1-1 경제적 재무제표下 공정가치(MVL)

- ◆ IFRS 13에 의해 산출되는 공정가치는 간접사업비, 투자비용 등 모든 현금흐름을 포함
 - 단, 이전가치(Exit value)의 개념에 기반한 공정가치의 경우, 계약의 경계 등의 개념이 IFRS 17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 할 수 있음

방안 1-2 K-ICS 보험부채를 활용한 공정가치법

- ◆ 금감원 감독회계 공개협의안에서는 K-ICS 상 보험부채를 전환시 공정가치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PWC는 공정가치기법의 출발점으로 MCEV, EEV 및 건전성 규제인 Solvency II의 보험부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 하지만, IFRS 13 공정가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K-ICS 규정(예, 할인율, 계약경계 및 현금호름 포함항목 등)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

(현금흐름 산출 대상)

현금 유입	현금 유출	
장래 수입보험료 등	지급보험금 사업비	 사망/장해보험금 질병/연금 보험금 기타사고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계약자배당금/보너스 등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손해관리비용 투자관리비용, 간접비 변액펀드 운용비용 등
	기타지출 등	

^{*} 출처 : 2017 보험자본규제(K-ICS 및 ICS) 필드테스트 산출기준서

※ 참고자료

[표 - IFRS 13 공정가치, IFRS 17 및 K-ICS 보험부채 산출방법론 비교]

구분	IFRS 13	IFRS 17	K−ICS 보험부채
관점	시장참여자	회사	회사
평가기준	이전가치(Exit Value)	이행가치(Fulfillment value)	이전가치(Exit Value)
현금흐름	모든 현금흐름 포함	간접비, 투자비용, 법인세 등 제외	간접비, 투자관리비 등 포함 한 모든 현금흐름
할인율	화폐의 시간가치	무위험이자율 + 유동성 프리미엄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 변동성 조정(혹은 매칭조 정)

구분	IFRS 13	IFRS 17	K−ICS 보험부채
불확실성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에 대해 시장참여자가 요구하는 보상 현금흐름 또는 할인율에 반영	비금융위험(보험위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불확실 성에 대해 기업이 요구하는 보상	보험부채를 이전할 경우 현행 추정부채를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운영리스크 포함) 자본비용법 (5%)
불이행위 험	자기신용위험을 포함한 불이행위험	적용안함	적용안함

^{*} 출처 : 보험개발원: Section III. 전환시 CSM 산출을 위한 공정가치법 적용 방법

- ◆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는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닌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로 위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여 시장참여자가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게 될 가정을 사용하여 측 정되어야 함
- ◆ 보험부채는 거래가 거의 없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주된 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장에 거래되는 가치(exit value)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이자율을 제외하고 모두 시장에서 관찰되지 않는 수준3 투입변수에 해당
- ◆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참여자가 사용하는 투입변수는 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이용해야 하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모델을 사용

Q 10.3

보험부채 공정가치 산출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 앞선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환시점의 공정가치 산출 방법에 2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방안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율은 아래와 같음

방안 1 경제적 재무제표下 공정가치(MVL)법 적용시 할인율 적용

- ◆ 공정가치법상 할인율은 IFRS 13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언급
 - IFRS13에서 요구하는 할인율은 무위험 수익률에 유동성 프리미엄 및 불이행위험 (자기신용위험)을 반영해야 함

방안 2 K-ICS 보험부채를 활용시 할인율 적용 방안

- ◆ K-ICS 보험부채 평가시 적용하는 할인율은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 구조(basic risk-free interest rate term structure)에 변동성 조정(volatility adjustment)이 가산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adjusted risk-free interest rate term structure)로 산출됨
- ◆ 하지만,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할인율은 무위험수익률에 보험부채의 유동성프리미엄 그리고 보험자 불이행위험을 반영해야 하므로 변동성 조정을 사용한 K→CS의 할인율과 원칙적으로 다를 수 있음
- ※ 공정가치 산출에 사용되는 할인율에는 보험사 자기신용위험을 반영해야하는데, 후순위채권 이나 신종증권을 활용하여 자기신용위험이 산출하거나 Solvency II 상 신용위험을 산출하는 PD x CoD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보험부채 공정가치 산출에 사용되는 리스크 마진 산출 방안은?

- ◆ 국내의 경우 보험계약 거래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전환시점 보유계약 CSM산출을 위한 IFRS 13의 보험부채 경우, 현재가치기법(IFRS13.B13~B30 참조, 기대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며, 이 경우 위험프리미엄은 현금흐름에 내재된 금융 및 비금융위험을 포함한 모든 위험을 반영해야 함
 - 방안 1과 같이 경제적 재무제표 하의 공정가치(MVL)로 산출할 경우, 시장가격이 관찰되지 않는 헷지불가능한 리스크에 대해서 위험마진을 설정하며, 보험위험, 신용위험(재보험) 및 운영위험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절함. 백분위접근법이나 자본비용접근법을 통해 위험마진 산출이 가능하나, 백분위접근법은 시장참여자 관점을 반영한 신뢰수준 결정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함
 - 자본비용접근법은 백분위접근법에 비해 효율적 위험관리가 가능하고, 계약에 내재 된 위험을 항상 반영할 수 있으며, 산출과정이 투명하고 검증 가능하므로, 자본비 용접근법 사용이 적절하다 판단
 - 방안 2의 K-ICS의 위험마진은 보험부채를 이전할 경우 현행추정부채를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IFRS 13에서 정의하는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 참여자가 요구하는 보상을 일관되게 적용 가능함
 - 위험마진 산출 방법에는 자본비용법이 사용되며, 이는 현재시점부터 보험만기까지 필요한 요구자본(기대요구자본)의 현재가치를 가용자본으로 보유함으로써 발생하 는 기회비용으로 계산함

	IFRS 17	MVL(방안 1)	K-ICS(방안 2)
정의	보험계약을 이행할 때 비금융위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 요구하는 보상	MVM for non-hedgeable risk는 시장 일관적 보험 부채(MVL)의 요소로, 보험부채 이전시 기대미 래현금흐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데 소요될 위험에 대한 비용	보험부채를 이전할 경우 현행추정부채를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대상 위험	보험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보험위험(사망률, 재해율, 유지율, 사업비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재보험), 운영위험	보험위험, 신용위험(재보 험) 및 운영위험

⇒ 방안 1(MVL)에서 자본비용접근법으로 산출하는 방법 및 방안 2의 K-ICS의 리스 크마진은 Solvency II 나 ICS에서도 사용 중인 리스크마진과 동일한 개념이며, 자 본비용률의 차이(Solvency II =6%, K-ICS=5%)만이 존재하나 이행현금흐름에서 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본비용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11. 재보험

[출재보험 인식관련 이슈]

Q 11.1

출재보험의 포트폴리오 및 그룹 설정 시기 및 단위는 어떻게 되는가?

- 인식 시기 -

방안

◆ 원수 계약인식시점과 재보험계약 집합 보장개시 시점 중 더 빠른 날에 인식

- 포트폴리오 -

방안 1

- ◆ 재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유사위험(예. 사망/건강)기준으로 구분
 - 원수보험과 일관성 측면에서 재보험계약의 유사위험 정의를 원수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 ◆ 재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유사위험(예, 사망/건강) 및 함께 관리(예, 비례/비비례 x P/L & OCI) 기준으로 분류
 - 재보험은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라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재보험으로 분류됨
 - 비례재보험은 원수보험의 출재비율에 해당하는 위험을 이전 시키며, 비비례재 보험은 특정보험금 또는 손해액을 초과하는 위험을 이전

- 계약그룹 -

- ◆ 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대상과 조건을 사전에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보험 Treaty 체결이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가 Treaty 체결에서 발생하며 재보험의 최소단위는 Treaty라고 볼 수 있음
 - 단, 하나의 Treaty(협약서) 단위 내 여러개의 재보험사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보험사마다 체결 조건이 다른 경우 협약서 x 재보험사로 최소 단위를 구분하는 방안도 고려 할 필요성도 존재
- ◆ 단, GoC 설정에 적용하는 수익성 기준(손상 가능성 정도) 및 Cohort, 포트폴리오 구분기준은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원수보험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일부 재보험계약은 여러원수보험을 통합하여 출재한 단일계약이므로 원수보험의 포트폴리오와 일치하지 않을 수있음
- ◆ 재보험계약은 Treaty 단위로 이익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Treaty별로 수익성 수준을 판단하여 계약그룹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출재보험에 적용할 회계모형 및 계약의 경계는 어떻게 되는가?

- 회계모형 -

방안

◆ 재보험계약이 1년 초과하는 경우, PAA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모형을 적용 (단, 재보험계약 에 VFA 모형 적용은 불가)

- 계약경계 -

방안 1

- ◆ 최소 계약단위별로 협약서(Treaty)에 따라 계약경계 판단
 - 협약서별로 Recapture 조건(예, 만기15년)이 있는 경우에는 재보험사는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 종료가 가능하므로 협약서 조건에 따라 계약경계 판단이 필요
 - 하지만, Recapture 조항이 없는 협약서의 경우에는 원수 보험 만기로 계약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

- ◆ Treaty 계약시 만기일을 명시, 재보험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이는 원수 사 입장에서 재보험사를 통제,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재보험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실질 적인 권리가 Treaty 만기일에 종료된다고 보기 어려움
 - (⇒) 따라서 재보험의 계약의 경계는 원수만기로 보아야 함

- 미래신계약 포함 여부 -

방안 1

- ◆ 최소계약 단위별 협약서에 따라 미래 신계약 포함 여부를 판단
 - 아직 판매되지 않은 신계약에 한해 협약서 조건에 따라 원수 / 재보사간의 합의를 통하지 않더라고 출재를 거부 할 수 있는 권리를 원수사가 보유
 - 특정일(90일) 이전에 재보험사에 공지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1월1일 재보험계약 채결한 경우, 1~3월까지 원수보험의 미래신계약과 대응되는 재보험계약은 현금흐름에 반영

방안 2

◆ 미래 신계약은 현금흐름에 미반영



출재보험의 현금흐름은 어떻게 구성되며 인식하는 단위는 무엇인가?

- ◆ 원수보험의 미래 신계약에 대한 재보험계약은 재보험계약의 계약경계 내에 있다면 현금호 름에 포함
- ◆ 원보험의 Input data와 재보험의 가정(출재율, 출재보험료, 출재수수료율)을 사용하여 현금 흐름 추정하며, 일반적으로 재보험의 경우 투자요소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보험계약대 출 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보험에 비해 필요 가정이 단순할 것으로 판단됨
- ◆ 출재보험의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출재율은 건별로 산출하여 적용
 - (1) 출재위험보험료 = 원수위험보험료×출재율×(1-보험료할인율%)
 - (2) 출재보험금 = 원수지급보험금×출재율
 - (3) 출재사업비(수수료) = 출재위험보험료×출재사업비율
 - (4) 출재손해조사비 = 지급손해조사비×출재율
 - (5) 출재이익수수료 = 출재위험보험료—출재보험금(Accidental Year 기준 진전반영 후)— 출재사업비(수수료)—출재손해조사비×출재이익수수료율(특약번호별)



출재보험에 적용할 할인율은 무엇인가?

방안

- ◆ IFRS 17 할인율(무위험 + 유동성 프리미엄)을 적용
- ◆ 기준서 문단 63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문단 32~36의 측정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원수보험계약 역시 이 문단을 적용하여 측정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미래 현금호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 원수보험계약 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사용하도록하고 있음

◆ IFRS 17 문단 36 할인율 가정 역시 원보험과 일관되게 재보험은 일반모형의 Non-par 상품에 적용되는 할인율 가정 사용



출재보험의 RA 산출 방안은 무엇인가?

방안 1

- ◆ 원수 RA 보유 RA*로 출재 보험 RA를 산출 (단. 미래 신계약은 미반영 및 사업비 위험은 제외)
 - 원수 기준의 RA 산출 결과값과 보유기준(원수보험계약에 재보험 현금흐름을 반 영)으로 산출한 결과값과의 차액을 재보험 RA로 정의하는 방안
 - * 보유 RA는 출재되지 않은 계약의 RA

- ◆ 재보험 RA 별도 산출
 - 원수 보험위험에 근거하여 출재,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가정 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함
 - 단. 사업비는 출재대상 위험이 아니므로 해당 RA 측정에서 제외함



출재보험의 Coverage Unit은 원수보험과 동일한가?

방안 1

♦ 예상 재보험금을 보장단위로 정의

방안 2

- ◆ 문단 B119에 따라 보험계약집합의 보장단위는 집합 내 계약이 제공하는 보장의 수량에 따라 결정됨.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집합의 경우, 보장단위는 보험자로부터 받는 보장이며 원수보험계약을 통해 보험자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보장이 아니나,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서 얻는 급부의 수량을 결정할 때 기업은 원수보험계약과 관련된 관련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음
- ◆ TRG 2월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5월 회의의 AP 5 부속 B 사례 7은 비례적인 재보험 보장 사례에서 보장 듀레이션은 원수보험계약과 동일하게 보고 있으며, 급부금의 양은 원수계약의 기대인수패턴을 반영하여 유효한 보험금청구 규모에 대한 판단 필요(예를 들어 보장의 패턴). 왜냐하면 제공된 서비스의 수준은 원수계약의 숫자에 의존하기 때문.(더 많은계약이 포함될수록 더 많은 서비스수준이 제공)
 - (⇒) 출재보험의 Coverage unit은 일반모형 적용 상품의 원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변동수수료접근법 적용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원보험 CU과 동일하게 적용 예정

방안 3

◆ 재보험계약은 Treaty별로 특정기간 동안 일정한 보장을 제공하는 서비스제공 계약이라 볼수 있으므로 원수보험처럼 개별계약의 보장의 양을 고려하지 않고 보장단위의 듀레이션만을 반영하여 측정가능할 것으로 보임



재보험자의 Non-performance risk를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어디에 반영되는가?

- ◆ 재보험사의 Non-performance risk 산출시 재보험사의 현재 재무 상황 및 신용등급을 고려
- ◆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두가지 방안 중 적용안 선택 예정

방안 1

- ◆ 각 시점의 기대신용손실액을 추정하여 현금흐름에 반영
 - 거래상대방의 불이행위험(신용위험)을 이행현금흐름에 반영하기 위해서, 대출채권 의 신용위험을 측정하여 충당금을 적립하는 방법론을 준용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음
 - 즉, 재보험 발행자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금흐름 발생시기별로 PD/LGD를 적용하여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 위험을 이행현금흐름에 반영할 수 있는데, PD값은 해당 재보험자의 신용등급과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PD값과 Mapping을 수 행하고 LGD는 별도의 담보가 없으므로 Basel 신용 LGD(45%)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K-ICS에서도 회수율은 50%의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를 사용하도록 규정) 따라서 아래 산식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액을 추정하여 이행현금흐름에 반영

손실조정 =
$$\sum_{i}^{n} (PD_i \times$$
부도시손실액 $_i)$

i= 평가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각 부도시점, n= 만기

PDi(부도확률) = PD • (1-PD)i-1

PD = 재보험상대방의 12개월 내 부도확률

(단. Ci는 부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i시점 회수예상액)

방안 2

◆ 기시와 기말시점에 간편법을 적용하여 금액 산출

$$PVCF_{x \in S^{1/2}} = PVCF_{x \in S^{1/2}} - \max\left(0.5 \times \frac{PD}{1 - PD} \times Dur_{MOD} \times PVCF_{x \in S^{1/2}}, 0\right)$$

PD: 재보험 상대방의 12개월 내 부도확률(PVCF내의 재보험사가 여러 개일 경우 평균PD사용)

Dur MoD :손실조정 반영전 재보험 자산의 수정 듀레이션

12. 발생사고부채



발생사고부채 대상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방안

- ◆ 발생사고부채의 정의는 기준서 본문 A. 용어의 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있음
 - 발생사고부채:

이미 발생한 보험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정당한 보험금과 기타 발생한 보험 비용을 지급할 의무. 이러한 사건에는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금은 아직 보고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된다.

- 보험사건:

보험계약에 의해 보장되고 보험위험을 발생시키는 불확실한 미래사건

- 보험위험:

계약의 보유자로부터 계약발행자에게 이전되는 위험으로서 금융위험 이외의 위험

- 금융위험 :

하나 이상의 특정변수의 미래 발생 가능한 변동으로 인한 위험.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 또는 신용지수나 그 밖의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및 기보고손해액(OS) 등 현행 지급준비금의 경우 발생 사고부채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추가로 금융감독원에서 7월 4일 생명보험 및 손 해보험의 준비금 표기 방식의 일원화에 따라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하여도 지급준비금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하며 IFRS 17상 발생사고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이를 부채로 계상 필요

관련 지급 준비금	정의	발생사고 부채여부
미보고발생손 해액(IBNR)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	0
청구미지급	보험자에게 청구요청이 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금 추정액	Ο
사고분할비금	지급시기와 응당일이 정해짐.	0
실효비금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된 계약 중 부활권 및 유보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 (해지환금금 상당액)	(방안 1) O (방안 2) X
장래손해 조사비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 소송· 중재,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방안 1) O (방안 2) X
소송비금	보험금 등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이 계류 중인 경우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소송이나 중재 등 보험사고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가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0
미지급보험금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등의 지급이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0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납입기일이 당해사업연도에 속하는 수입보험료 중에서 사업연도 말 현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 (보험료수취가정에 반영되어 있음)	Х
보증준비금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등을 고려하여 적립하는 금액(변액)	X
계약자배당 준비금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계약자배당(이자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 위험률차배당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	0

관련 지급 준비금	정의	발생사고 부채여부
계약자이익 배당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유배당상품의 계약자지분에서 계약자 배당준 비금을 적립한 후에도 남는 잉여금이 있는 경우 장래의 계약자배당재원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	(방안 1) O (방안 2) X
배당보험손실 보전준비금	영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	(방안 1) O (방안 2) X



발생사고부채에 해당되는 계약의 위험조정 산출이 필요한가?

- ◆ 단순히 지급시점만 불확실한 지급준비금은 비재무적 위험조정의 산출대상위험이 아님. 하지만 개별추산 지급준비금과 같이 지급(발생)시점 뿐만 아니라 금액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비재무적 위험조정을 산출할 필요가 있음
 - ※ 중요성 관점에서 산출제외 가능할 것으로 판단
- ◆ 현행 개별추산 지급준비금 이외에도 총액추산을 하는 IBNR도 IFRS 17에서는 발생사고부 채에 해당
- ◆ IBNR은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사 단위에서 추산되지만, 당기에 발생된 사고부채로 간주되고, 그 금액이 변동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조정의 산출대상임



발생사고부채에 해당되는 계약의 이자비용(금융손익 체계적 비용)은 어떻 게 산출되는가?

방안 1

- ♦ 이자비용 체계적 배분 대상이 되는 발생사고부채는 다음과 같음
 - 사고분할비금, 실효비금, IBNR, 이차비금(단, 만기시까지 예정이율 부리되는 계약 등)
- ◆ LIC는 최초측정시 해당 계약의 최초시점 할인율에 따라 측정이 필요하며, 해당 할인율에 기반하여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현행 할인율과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 필요

- ◆ OS 항목은 현행결산방법 유지: 원가율로 매월 산출 부리
- ※ 소멸시효 존재 및 청구일자 비율 검토결과 화폐의 시간가치의 중요성이 낮아 반영하지 아니함
- ◆ IBNR은 사고계약의 최초 계약집합 기준으로 할인, 부리 및 현행 할인율로 시가평가 수행

13. 연결 회계정책



연결시 모회사 자회사의 RA를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방안

◆ 모회사와 자회사의 판매상품간 분산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각각을 개별 reporting entity로 간주하여 모회사와 자회사의 개별 RA를 합산하여 연결 재무제표 작성



자회사의 보험계약은 별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가?

- ◆ 포트폴리오는 유사위험 /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위험이 유사하더라도 관리되는 pool이 다를 것임
- ◆ 또한 상품가정, 결산가정 등 이행현금호름 측정시 반영하는 기본가정이 연결관점에서 고려하여 반영되지 아니하고, RA 측정을 별도 재무제표에서 구성토록 요구한 점을 참조시에 포트폴리오도 별도 구성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